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9나59293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9나59293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가단24144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보경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현정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의

담당변호사 김호민, 박종익, 박지영

변론 종결 2020. 5. 28.

판결 선고 2020. 8. 20.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가단24144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9,977,089원 및 그 중 9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그 중 14,977,089원에 대하여는 2018.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송영환

판사강문희

판사김현성